

선교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교단의 선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업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타 지원 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방법)

선교기금의 사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총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기금의 일부를 총회 선교사업을 위해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 단, 기금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 내용에 의한다.
3. 본 기금의 이익금 및 기금의 일부 대여 사용은 선교위원회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사용토록 한다.

제3조 (관리)

선교기금의 관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선교기금은 특별 회계로 하며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금 적립 방법은 총회 유지재단이사회가 정한다.
3. 유가증권 표기 명익는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이사장과 총회 총무로 한다.
4. 기금 상황을 연 1차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대여금)

대여금 총액의 한도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조 (대여기간)

기금의 대여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금의 상환 의무를 이행 완료 시에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대여금 한도)

대여 한도액은 1 교회당 일금 3,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대여의 취소)

1. 대여이율은 부과하지 않는다.
2. 대여의 취소

대출 결정을 한 후 서류 구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출을 취소한다.

제8조 (담보)

담보물의 제공은 부동산(교회당 또는 단체 명의의 재산 제외)의 근저당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 결의에 의해 노회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대여교회 선정)

1. 총회본부는 총회 회보에 신청교회를 공고하고, 선교기금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본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접수된 서류는 총회 선교위원회가 심의,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대여 대상 선정기준)

1. 노회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취약 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본 교단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개척교회나 교역자생활비보조 수혜교회의 교회당 건축부지 및 신축 자금에 대해 대여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 (위약)

대여를 받은 교회가 상환 기일에 원금을 상환치 않을 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약금을 납부하되 원금의 10%를 내야 한다.
2. 상환기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환치 않는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교회들은 선교기금 대여 선정교회에서 제외한다.
3. 상환기일을 3년 이상 경과할 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정)

이 관리세칙은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관리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통합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